

<별표 23>

종합금융회사의 신용공여¹⁾의 범위

(제8-33조 관련)

대분류	소분류
B/S난내	
(대출채권)	원화대출금, 외화대출금, 내국수입유산스, 역외외화대출금, 지급보증대지급금, 콜론, 할인어음(무역·팩토링어음 포함), CMA할인어음(무역·팩토링어음 포함), 기일경과어음, 관리어음, 매입외환, 외상채권매입, 환매조건부매수
(증권)	사모사채, 자회사 ²⁾ 발행회사채, 대여증권
(리스채권) ³⁾	금융리스채권(금융리스선급금 포함), 운용리스자산(운용리스선급금 포함)
(기 타)	여신성가지급금, 미수금
주 석 ⁴⁾	확정지급보증 ⁵⁾ , 미확정지급보증, 외화대출약정, 역외외화대출약정, 어음지급보증, 무역어음인수, 담보배서어음매출

주: 1) 「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」 <별표 00>의 "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"상 위험가중치가 0%, 10% 또는 20%인 자산은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. 다만, 당해 종합금융회사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경우("자회사"라 한다)에 대한 신용공여 산출시에는 동 자회사가 20%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일지라도 동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신용공여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.

2) 종합금융회사 자회

3) 리스채권의 신용공여액은 금융리스, 운용리스 모두 미회수원금을 기준으로 함

4) 「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」 <별표 00>의 "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"에 따른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용공여액을 산출함

5) 입찰보증 제외